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6. 25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6월 5일

나. 발 의 자 : 박정자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9. 6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박정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친화 도시 조성
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그 밖에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- 본 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 - 안 제3조제5호와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%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측되고 있으며, 우리구도 2018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4,906명으로 전체 인구(367,778명) 중 약 15%를 차지하고 있음. 따라서,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, 관련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정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6월 일

발의자 : 박정자 의원 외 5명

1. 제안이유

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그 밖에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 정비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9. 5.31. ~ 6. 5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”을 “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”으로, “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·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”을 “시책 강구”로 한다.

제2조,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,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, 제2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노인복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노인의 고용 및 소득 지원 사업
2. 노인의 건강증진, 생활환경 및 안전보장 사업
3. 노인의 사회·교육·문화·여가활동 등 장려에 관한 사업
4.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

5.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, 고령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와 위탁방법·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④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(중전의 제2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”를 “구청장은 다음 각 호”로, “자에 대하여”를 “사람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(양로·요양·여가시설·재가시설·노인보호전문기관)”을 “제24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및 시설 등

제4조(중전의 제3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”를 “제3조제1호의 시설에 다음 각 호에서”로, “범위

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조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는”을 “제3조제2호에 따라”로, “소요경비 및”을 “소요경비와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조제1호”를 “제3조제1호”로, 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”을 “사람에게 예산의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조제4호의 장수노인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”을 “제3조제4호의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3조제5호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종전의 제4조)의 제목 “(다른 법령 또는조례와의 관계)”를 “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·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----- 시책 강구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노인복지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노인의 고용 및 소득 지원 사업 2. 노인의 건강증진, 생활환경 및 안전보장 사업 3. 노인의 사회·교육·문화·여가 활동 등 장려에 관한 사업 4.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

제2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 시설(양로·요양·여가시설·재가시설·노인보호전문기관)

2. ~ 4. (생략)

<신설>

제3조(지원내용) ①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제2조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

에 관한 사업

5.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, 고령 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

사람에게

1. 제24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단체 및 시설 등

제4조(지원내용) ① 제3조 제1호의 시설에 다음 각 호에서

범위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제3조제2호에 따라 소요경비와

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시설 또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제2조제4호의 장수노인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조(다른 법령 또는조례와의 관계) (생략)

<신 설>

----- 범위-----
-----.

③제3조제1호 -----
----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-----

-----.

④제3조제4호의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-----
-----.

⑤ 제3조제5호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 · 제6조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와 위탁방법·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④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 · 제8조 (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)